

#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SWIFT시스템의 적용에 관한 고찰

An Application of SWIFT System to a Credit Transaction

崔 鳳 赫\*

- I. 서론
- II. 서류거래의 위기
- III. SWIFT시스템의 기능과 구조
- IV. SWIFT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 업무
- V. SWIFT시스템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 VI. 결론

## I. 서론

상품매매에 있어서 가장 안전한 결제 수단이라고 하는 신용장거래는 서류거래를 원칙으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없는 거래 방식인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가 최근에 들어 각광을 받게 됨에 따라 신용장 거래에서도 이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EDI방식의 일종이라 할 수 있는 SWIFT시스템은 회원자격을 가진 은행간에 주로 이용되고 있으나 최근에 들어와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무역자동화 시스템에 적극 호응하여 신용장에 관한 업무는 물론이거니와 수출입승인서 등의 발급을 관계 기관에 통보를 해주는 단계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종래의 은행간 업무인 결제자금의 이체를 비롯하여 추심 및 신용장거래 등에 은행간에 이루어 지는 통신은 주로 우편, 전보, 텔렉스,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

\* 國際貿易研究院 院長, 仲裁人, 中央大 講師

었다. 그러나 1992년 우리나라의 은행들이 SWIFT에 가입을 하게 되고 또한 국내은행들이 자체업무에 대한 전산화를 이룩하였을 뿐 아니라 컴퓨터의 보급이 대중화됨에 따라 국제간 통신에도 SWIFT시스템을 이용하게 되었다. SWIFT시스템이라 함은 1992년 부터 세계 각국의 은행이 조합의 형태로 발족시킨 일종의 국제통신망으로, 자체에서 구축한 전송망을 통하여 은행의 국제간 업무에 관한 각종 데이터타를 비롯하여 통신문의 전송까지 중계해 주고 있다. SWIFT시스템에 의한 데이터의 전송은 종래의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방식보다 훨씬 빠르고 안전하게 데이터의 교환이 가능해 짐 따라 오늘날 거의 모든 은행간의 거래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종합무역 자동화망이 어느 정도 구축됨에 따라 EDI network을 이용하여 신용장의 개설 및 통지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현재 SWIFT가 개발중인 전자서류가 완성되고 SWIFT망의 단점이 보완된다면 머지않아 대금결제를 위한 운송서류가 전산망을 통하여 발송되고 이를 개설은행이 심사하여 대금 지급여부를 즉시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신용장 거래에 일대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WIFT시스템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업무를 소개함과 아울러 신용장 업무를 분석·검토하므로써 SWIFT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신용장거래 관습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향을 모색하여 신용장거래에 일조를 기하고자 한다.

## II. 서류거래의 위기

### 1. 서류거래의 연혁

신용장은 원거리에 존재하는 매매당사자간에 대금을 결제할 목적으로 고안된 수단으로 특히 물품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상품을 화채시킨 상업서류 및 금융서류를 은행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또는 매입하는 형태를 띄게 된다. 따라서 신용장 방식의 결

제는 근본적으로 CIF매매를 대상으로 하는 결제에 주로 이용하도록 고안되었으나 FOB거래가 변형된 방법으로 많이 이용됨에 따라서 FOB방식에도 신용장을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신용장은 독립추상성의 원칙, 엄밀일치의 원칙 및 서류거래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여 수입자의 신용을 은행의 신용으로 전환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sup>1)</sup>.

신용장 거래가 서류거래라는 명문규정은 1933년 신용장 통일규칙이 제정될 당시에는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았으나 총칙 B항에서 신용장의 요구 서류 또는 문서는 완전하고 정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간접적으로 서류거래임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었다<sup>2)</sup>. 그러나 서류거래의 원칙은 통일규칙이 1차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명문규정으로 삽입되었다<sup>3)</sup>. 그후 2차 개정<sup>4)</sup>, 3차 개정<sup>5)</sup> 및 4차 개정<sup>6)</sup>을 통하여 이 원칙이 실무상에 적용되었다. 그 후 1993년 통일규칙이 5차로 개정되면서 “- deal in documents-” 라는 용어 대신에 “- deal with documents -”라는 용어로 변경되었으나 신용장 거래가 서류거래라는 근본적인 취지에는 변함이 없다.

은행은 서류거래의 원칙에 따라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며 비록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일치하는 상품을 공급하였다 하더라도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대금지급은 거절된다. 이 원칙은 신용장의 가장 중요한 성질인 독립·추상성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수단으로서 상품으로 인한 분쟁에 은행이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매도인이 약정 상품을 공급하고도 지급을 받지 못하는 단점도 갖고 있다<sup>7)</sup>.

## 2. 무종이 서류거래의 대두

- 1) 특히 서류거래의 원칙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신용장 거래를 서류거래로 단 순화시키면서 신용장의 이용도가 획기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 2) UCP Brochure No. 82, Provision B. It is essential that instructions regarding papers or documents required be complete and precise. ---
- 3) UCP Brochure No. 151, Article No. 10, In Documentary credit operations, all parties concerned deal in documents and not in goods. ---
- 4) UCP Brochure No. 222, Article No. 8
- 5) UCP Publication No. 290 Article No. 8
- 6) UCP Publication No. 440, Article No 5
- 7) 매도인이 제시한 서류가 사기서류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매수인은 신용장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기 때문에 매수인의 지위도 상대적으로 약화된다는 단점이 있다.

신용장 거래가 서류거래라는 원칙은 통일규칙이 제정되면서 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중요한 특성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서류거래의 원칙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즉 무역거래에서 더이상 서류거래의 원칙을 고집할 수 없는 상황이 내도하였다는 것이다.

이같은 견해는 운송방식이 일관운송체계 및 선박의 고속화 등으로 상품의 이동시간이 대폭적으로 단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의 이동시간은 종전과 다름없이 장시간 소요되어 화물의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발하면서 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와 같이 근거리 국가간에 무역이 이루어질 경우, 서류의 이동시간이 지연된다는 것은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게 되어 경쟁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화물의 선도착과 서류의 후도착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수입화물 선취보증서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운송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하인에게 화물을 인도하는데 따른 제반 문제점으로 인하여 운송인과 수하인 간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됨에 따라 운송인은 이러한 인도방식을 기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운송서류와의 상황이 없어도 수하인이 본인임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화물을 인수할 수 있는 방식인 해상화물운송장이 등장하게 되었다. 해상화물운송장은 유가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서류의 원본이 없더라도 화물의 수취가 가능하여 본·지사간의 거래나 이사화물 등의 운송에 주로 이용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 역시 일시적인 수단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이다.

해상화물운송장은 물품통관의 신속화를 목적으로 종래에 선하증권의 역할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등장하게 되었으나 동 운송장이 해상운송에 등장한 것은 1970년대 말부터라 할 수 있다.<sup>8)</sup>

선하증권 대신에 해상화물운송장을 이용하는 율은 대서양 항로의 경우 화물의 85%에 달하고 있으나<sup>9)</sup> 전세계적인 물품의이동량을 미루어 볼 때 해상화물운송장의 이용율은 선하증권의 이용률 보다 낮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해상화물운송장의 이용율이 매우 낮지만 수입화물선취보증서와 관련된 국내 판결이 운송인에게 불리하게 판결됨에 따라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사용을 꺼리게 되어 해상화물운송장의

8) JASTPRO, "海上航空貨物に係る輸出入制度手續の調査研究", 1989. 3. p.37.

9) John F. Wilson, Carriage of Goods by sea, 1st ed. Pitman, 1988, p. 159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상화물운송장이 비록 유가증권성을 갖지는 못하지만 하나의 운송증권으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춘 서류의 일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운송장이 발행될 경우, 서류거래의 원칙에서 벗어난 것으로 간주하는 이유는 비록 동 운송장이 서류의 형태를 갖추고는 있으나 화물을 인수하는 데에는 동 운송장의 제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해상화물운송장의 사용이 확대되는 경우 이를 무조건 서류거래의 확대로 간주하여도 충분할 것이며 또한 이를 서류거래의 원칙에 대한 위기로 해석하여도 무방할 것이다<sup>10)</sup>.

### 3. 서류거래의 원칙의 수정

컴퓨터가 널리 보급되어 대중화되면서 컴퓨터를 이용한 서류의 전송방식이 고안되기 시작하여 무역거래에 있어서 서류의 송부방식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종래에는 우편 또는 Courier Service를 이용하더라도 화물이 먼저 도착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상화물운송장을 이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서류가 데이터화하여 전송망을 통하여 전송된다면 서류의 발송과 수취가 동시에 일어나게 되어 무역거래에 있어서 해상화물운송장이 불필요하게 될 것이며 또한 이에 따른 상관습도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장점으로 인하여 세계 각국은 무역거래의 컴퓨터화 즉 EDI화를 목표로 현재 다양한 소프트 웨어의 개발은 물론이거니와 전자문서의 표준화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UN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서류간소화가 본격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서류거래를 지양하는 움직임이 무역계에 널리 확산되기 시작하여 서류거래의 원칙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신용장 통일규칙이 4차로 개정되면서 신용장 거래에서 EDI에 관한 규정을 삽입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개정 실무작업반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ICC의 통일규칙개정 실무작업반에서는 이번 5차 개정 내용에 EDI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느냐 하는 문제가 궁극적으로 토의되었다. 그러나 서류거래의 원칙인 신용장거

10) 「서류거래의 원칙에 대한 위기」라는 용어는 필자가 본 연구에서 임의로 사용한 용어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확정된 용어가 아님을 밝혀둔다.

래에 무서류거래인 EDI를 수용하는데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전문위원들간에 인식을 같이하고 EDI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지 아니하였다. EDI에 관한 규정이 삽입되지 못하였다고는 하나 EDI도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부의 규정이 삽입되어 앞으로 EDI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개념은 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전자문서에서 EDI를 하나의 정규 문서로 인정하고 있다<sup>11)</sup>. 이는 Incoterms 1990에서도 인정된 것이다<sup>12)</sup>.

둘째, 상업송장에 서명을 필요로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전자식 상업송장의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서명에 관하여 전자식 또는 기계식 서명을 인정하므로써 EDI도입을 위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정하였다.

넷째, 일자와 관련된 용어의 표기를 세계적으로 통일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즉, 년, 월, 일 순으로 표시하도록 표준신용장 양식의 작성지침을 마련하였다<sup>13)</sup>.

다섯째, 각국의 통화를 알파벳으로 표기하되 세자리 문자로 조합된 통화코드를 사용토록하므로써 국제적인 표준을 마련하였다<sup>14)</sup>.

여섯째, 신용장 표준양식을 거래당사자들이 실무적으로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개정하였다. 특히 UN이 권장하고 있는 Layout key를 참작하여 표준 양식을 제정하였다<sup>15)</sup>.

11) UCP 500 Article No. 20, b, Unless otherwise stipulated in the credit, banks will also accept as an original document(s), a document(s) produced or appearing to have been produced

i. by reprographic, automated or computerized:

ii. as carbon copies:

12) Incoterms 1990, A.1. The seller must "Provide the goods and the commercial invoice, or its equivalent electronic message,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of sale and other evidence of conformity which may be required by the contract".

A.8. "When the seller and the buyer have agreed to communicate electronically, the document referred to in the preceding paragraph may be replaced by an equivalent electronic data interchange(EDI) message."

13) 예를 들면 1995년 6월 30일은 95/6/30로 표기한다.

14) 미국 달러화는 USD, 프랑스의 프랑화는 FFR로 표기하는 것이 그 예이다.

15) 이는 현재 SWIFT로 전송된 전자 신용장을 종이서류로 출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전초 작업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 4. 신용장거래와 SWIFT시스템

SWIFT는 국제은행간의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전송을 자동화하고 암호화하여 타인이 이를 도용할 수 없도록 하는데 있다. 따라서 국제금융거래의 주류를 이루는 은행간의 계좌이체 및 신용장 거래를 SWIFT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함으로써 신속성을 도모하고 오류를 줄이자는데 있다.

SWIFT에 의한 금융거래에 있어서 신용장 및 이와 관련된 메시지의 이용량은 아직까지 전체 SWIFT 이용량에 비하여 10% 미만이지만 이용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신용장거래에서 SWIFT의 이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신용장의 표준문서가 제대로 개발되지 않은 것과 신용장 관련 업무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종합 EDI망이 갖추어져 있지 않을 경우, SWIFT시스템은 신용장거래에서 신용장의 통지, 정정 등 업무의 일부에만 이용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어 종합 EDI망이 가동될 때까지는 SWIFT의 이용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신용장거래에서 서류를 전송하는 경우, 서류의 송부와 수취가 동시에 일어나 매수인이 화물을 검사하기 전에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 진다. 따라서 매도인이 위조 서류를 이용하여 사기를 시도할 우려가 높아 진다. 신용장 거래에서 매수인이 원칙적으로 화물을 검사하는 것은 서류의 하자를 용인하고 이를 수락하겠다는 추인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종래에는 신용장이 우편으로 개설될 경우, 우편일수 만큼의 통지기간이 소요되어 불편한 점이 뒤따라 신용장의 주요내용을 전신으로 사전에 통지하는 예가 많았다<sup>16)</sup>. 이 경우 비록 통지에는 시간이 걸릴지 모르나 발행은행의 서명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 개설방식에 비하여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sup>17)</sup>. 또한 전보로 개선될 경우 전보를 배달하는 시간이 소요되며 최근에 개발된 전기통신방법인 팩스나 팩시밀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들 기계의 전송속도가 SWIFT에 비하

16) 이에 관한 규정은 신용장 통일규칙(UCP 500) 제11조에 명시되어 있다.

17) Test key를 사용하여 신용장의 진위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신용장에 명시된 서명권사의 서명을 확인하는 것 보다 간편하다.

여 상대적으로 느리다. SWIFT메시지는 송수신 처리기간이 약 20초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Telex 및 우편방식에 비해 통신 소요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SWIFT의 이용 현황 (1994년말 현재)

년 월	한 국	전 세 계	점 유 율
'92. 3	131,942	34,428,153	0.38
4	135,422	32,428,522	0.42
5	153,413	31,328,097	0.48
6	174,231	34,785,210	0.50
7	181,532	36,870,583	0.49
8	175,256	31,083,000	0.56
9	182,096	36,044,266	0.51
10	201,631	36,471,349	0.55
11	195,894	33,835,087	0.58
12	225,308	34,426,330	0.65
'93. 1	199,928	32,611,714	0.61
2	225,514	34,598,991	0.65
3	285,833	39,742,088	0.72
4	291,701	36,879,156	0.79
5	284,718	35,366,696	0.81
6	348,209	39,972,746	0.87
7	338,307	39,864,249	0.85
8	326,278	38,382,398	0.85
9	333,033	40,288,279	0.83
10	344,715	39,342,052	0.88
11	361,563	39,688,476	0.91
12	386,681	40,365,247	0.96
'94. 1	360,275	39,333,456	0.92
2	336,041	39,318,478	0.85
3	444,023	46,353,004	0.96
4	409,567	40,313,526	1.02
5	428,992	41,825,426	1.03
6	452,343	45,143,340	1.00
7	446,758	43,082,509	1.04
8	455,395	44,590,368	1.02
9	458,296	44,597,910	1.03
10	486,166	43,712,296	1.11
11	505,726	45,379,055	1.11
12	542,852	44,245,136	1.22

자료: SWIFT사무국



### III. SWIFT시스템의 기능과 구조

#### 1. SWIFT의 의의 및 설립배경

1960년대 초부터 각국의 국제은행들은 금융기간의 국제금융업무의 증가에 따라 이미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국제간의 금융업무에 관한 자료처리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외환 업무량의 증가로 인하여 기존의 업무처리에 한계를 느끼게 된 각국의 은행들은 결제제도의 자동화가 절실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1973년 유럽 및 북미은행들이 중심이 되고, 각 은행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국제간의 금융업무를 전산처리하기 위하여 비영리협회 형태의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가 설립되었다. SWIFT는 국제 은행간의 자금결제 및 신용장 등의 표준화된 데이터<sup>18)</sup>를 네델란드와 미국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통제소의 컴퓨터망을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는 SWIFT I 시스템을 마련하고 운영에 착수하였다.

SWIFT는 1977년 5월 가동을 시작하였으며 그 후 1987년 6월 국제금융관련업무를 취급하는 비은행 금융기관, 증권브로커 및 딜러, 중앙수탁기관 및 결제기관, 여행자수표 발행기관, 신탁회사에 대하여도 SWIFT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다. 그 결과 업무량의 폭주로 인하여 SWIFT I의 용량이 한계에 부딪치게 되어 시스템의 확장 작업에 들어가 1992년 5월 부터 SWIFT II의 가동이 시작되었다. SWIFT II는 증가일로에 있는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대형화되었으며 이용자 증가나 새로운 서비스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또한 고도의 기술을 이용하여 보다 향상된 국제금융업무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점이 특징이다.

SWIFT는 이와 같이 비영리 협회를 지칭하는 기관의 명칭이지만, 동 협회가 제공하는 시스템도 SWIFT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어 사실상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18) SWIFT uses common language to identify information exchanged on the network SWIFT, Standards Volumes Update, Version 1 2, 93/1, chapter 2.3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SWIFT가 설립되었다.

SWIFT의 설립목적을 살펴보면,

첫째, 금융거래에 사용하는 메시지의 양식의 표준화 및 전송처리의 자동화추진을 위한 금융기관의 국제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둘째, 메시지 전송을 위한 Network와 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공동 이용하고 개발·유지하며,

셋째, 지역 및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거래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전송처리시간을 단축하며,

넷째, 전송메시지를 암호화하여 보안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 2. 우리나라의 도입과정

우리나라는 1982년 12월 전국은행협회의 외국환 전문위원회에서 SWIFT 가입안을 승인하고 은행지로관리소내에 SWIFT사무국을 설치할 것을 결의하였다. 1983년 4월 31개 은행의 개별 가입신청서를 SWIFT이사회에 제출하였으나 SWIFT와 DACOM 사이의 전용회선사용에 관한 의견차이로 협상이 결렬되어 가입추진이 중단되었다.

그 후 금융결제원의 발족을 계기로 하여 1986년 6월 SWIFT본부와 협상을 재개하였다. 1989년 체신부의 국제전용회선 타인사용 특례인정으로 가입추진이 본격화되었으며 1989년 전회원 그룹과 사용자그룹을 결성하였다. 1990년 5월 DACOM과 금융결제원간에 전용회선 사용계약서에 합의하여 동년 8월 SWIFT와 금융결제원간 계약서 조인을 마쳤으며 1991년 3월 SWIFT이사회에서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가입을 승인하였다.

1991년 6월 SWIFT측과 금융결제원간 RAD(Regional Administration) 및 SITE 계약<sup>19)</sup>을 체결하고 기기, 모뎀설치 및 line 접속을 완료하였다. 한편 지역처리센터(Regional Processing Center; RPC)를 금융결제원내에 설치하고 1992년 SWIFT운영에 대한 Test 및 Training을 실시하였으며 SWIFT본부 앞으로 정식사

19) SWIFT로 부터 행정, 기술, 환경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금융결제원이 SWIFT 본부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용을 통보하여 1992년 3월 2일 가동하였다.

금융결제원에서는 데이콤의 전용회선을 이용하여 SWIFT의 지역처리센터와 통신을 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2개의 회선을 사용하고 있는데 1회선은 홍콩과 인공위성을 통하여 통신을 하고 있으며 다른 한 선은 해저케이블을 이용하여 일본의 오사카와 통신을 하고 있다.

### 3. SWIFT시스템 통신망의 구조

SWIFT는 중앙통제소(System Control Processor; SCP)와 부통제소(Slice Processor; SP), 지역통제소(Regional Processor; RP) 그리고 SWIFT접속점 또는 중계소(SWIFT Access Point ; SAP)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SWIFT는 네델란드와 미국에 중앙통제소를 4곳에 설치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에 네델란드의 중앙통제소만을 가동하고 나머지 3개소는 예비용으로 두고 있다. 중앙통제소는 SWIFT시스템에의 접속 및 사용, 시스템의 활동상황에 대한 감시 및 조정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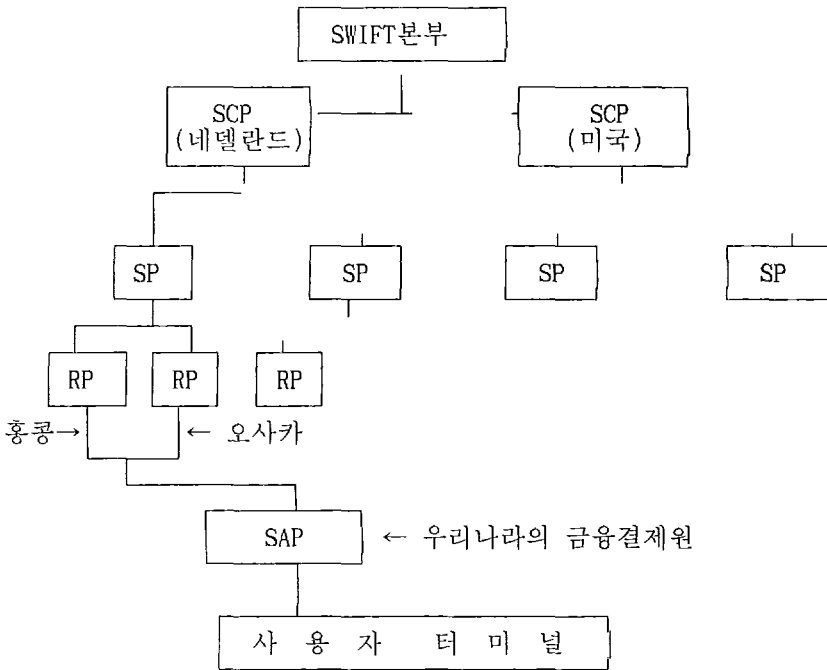
부통제소는 중앙통제소와 연결되어 있으며, 전송된 메시지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도록 조정하며 메시지 내용과 일정을 지역처리센터에 통고하며 메시지를 2부 저장한 후 추후에 사용자 측이 정정을 원할 경우 이에 응할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는다.

주요국에 설치된 지역통제소는 사용자와 부통제소간의 메시지 전달을 제어·조정하며 표준 메시지양식을 사용여부 등을 점검하고 메시지 확인하고 사용자가 전송한 메시지를 2일간 저장한다.

SWIFT 접속점 또는 중개소는 개별사용자가 SWIFT와 최초로 연결되는 접속점으로 송수신되는 메시지를 집중시켜 중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sup>20)</sup>. 우리나라의 경우 1986년 금융결제원에 SWIFT사무국이 설치되어 중개소로 운용되고 있으며 지역통제소와의 연결은 DACOM의 전용회선을 이용하고 있다.

20) 사용자로부터 SWIFT중계소까지의 연결은 사용자의 책임하에 하며 이때 메시지를 암호화하여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림 3-1> 통신망의 구조



자료: 외환은행 외환업무부, SWIFT, 1992, p.11  
 \* 점선은 예비용임

#### 4. SWIFT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은행의 고유번호 및 인증 키

##### (1) 은행의 고유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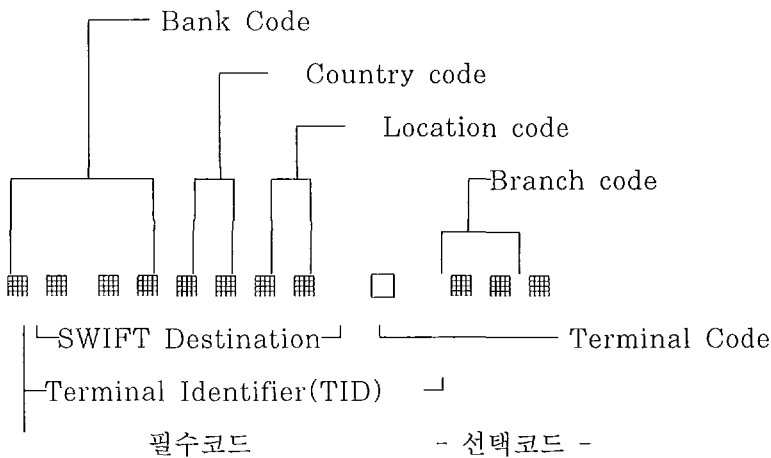
금융기관을 코드화하여 자동화 처리하기 위하여 SWIFT가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명시한 Coding system을 바탕으로 Member, Sub-member, Participant 들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은행의 고유번호 또는 BIC(Bank Identification Code; BIC)라 한다. BIC는 회원의 자체 필요에 따라 1개 또는 여러개의 BIC를 신청할 수 있으며 년 4회에 걸쳐 발간되는 BIC Directory에 실려 모든 가입자에게 통지된다.

메시지상의 feild에는 금융기관명을 넣게 되어 있는데 이때 BIC를 이용하게 되면

전문길이를 축소할 수 있음은 물론, 표준화로 인해 수신되는 내용의 자동처리가 가능케 된다<sup>21)</sup>.

BIC는 본점인 경우 8자리, 지점 코드를 사용할 때는 11자리로 구성되며 구조는 아래와 같다. 첫번째의 8자리 숫자는 필수적인 코드로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8자리 숫자 가운데 처음의 네자리 숫자는 은행 코드로서 알파벳 A부터 Z까지를 사용할 수 있으나 X는 사용할 수 없으며, 중간에 두자리 숫자도 국가 코드로서 알파벳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림 3-2〉 BIC의 구성



나머지 두자리 숫자는 지역코드로서 알파벳 또는 숫자를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지점에서 SWIFT시스템을 직접 이용할 경우 11자리 숫자 가운데 나머지 3자리 숫자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이는 가입 금융기관의 본점에서 임의로 부여하는 코드 번호이다.

BIC Directory는 국제표준기구(Organization for International Standard: ISO)의 등록부<sup>22)</sup>에 의해 SWIFT가 년 4회 발행하며 책자 또는 computer Load in하는 방법으로 회원 금융기관에게 제공한다.

(2) 인증 키

21) SWIFT, Standard Volumes Update, Part IV-ISO Bank Identifier Code 4-1  
22) ISO 9362

SWIFT인증 키(SWIFT Authenticator Key: SAK)는 SWIFT시스템의 송수신에만 사용되는 것으로 종래의 은행간 메시지의 진위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용되었던 test key와 유사한 것으로 종래에는 수작업으로 test key를 검증하였으나 SAK를 이용하면 SWIFT시스템이 자동으로 Algorithm을 부여하여 검증이 된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보안기능이 더욱 강화되고 메시지 처리 절차도 신속,간소화 된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메시지의 보안을 위해 SAK교환 및 관리에는 지정된 담당자 이외에는 타인의 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 Authenticator Key는 32자리의 Key를 숫자 0부터 9까지와 알파벳 A로 부터 F까지를 사용하여 무작위로 만든다. 이러한 인증키가 외부에 노출되면 타인이 사용할 수 있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담당자에게 플라스틱 카드를 발급하고 이 플라스틱 카드로 접속을 하면 사용자에 대한 확인이 자동으로 이루어져 타인의 불법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

#### IV. SWIFT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업무

##### 1. SWIFT시스템의 서비스 종류

SWIFT시스템은 회원에게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sup>23)</sup> 메시지의 송수신 처리기간이 약 20초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Telex 및 우편방식에 비해 통신소요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다<sup>24)</sup>. 이에 따라 외국환 매매거래의 체결 및 확인이 신속히 처리됨은 물론 환 Position 관리 및 검토절차가 크게 단순화된다.

###### (1) 서비스 메시지

SWIFT가 제공하는 서비스 메시지는 사용자가 SWIFT가입자 또는 가입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하여 SWIFT시스템에 접속을 시도하거나 또는 접속을 종료시키기 위해 행하는 요청을 말한다. 서비스 메시지는 SWIFT시스템에 전송하는 메시지

23) 중소기업은행, . p. 18

24) KTNET, 「상역.외환실무과정」, 한국무역정보통신, 1995. p.5

로, 접속하는 방법은 일반접속과 금융접속<sup>25)</sup>으로 구분된다. 서비스 메시지는 접속 시도인 LOGIN에서 부터 접속을 종료하기 위한 LOGOUT까지의 명령으로 LOGIN의 요청, 선택명령(select command), 종료명령(quit command), 메시지의 송수신의 통제 LOGOUT 명령(logout command), 접속중지(system remove/abort), 수취인정(acknowledgement)의 순서와 방법으로 전송된다<sup>26)</sup>.

### (2) 시스템 메시지

시스템 메시지는 사용자가 시스템과 접속되어 상대방에게 전송을 개시한 시점부터 전송을 종료할 때 까지의 시스템 상황에 대한 정보를 SWIFT가 사용자에게 통지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 (3) 은행간 메시지의 서비스

은행간 메시지의 서비스는 SWIFT가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금융 및 외환거래와 관련된 서비스로 거래형태별로 대고객 이체 및 수표거래, 금융기관간 이체, 외환거래, 화환신용장 및 지급보증, 공통메세지 등이 있다<sup>27)</sup>.

### (4) 기타의 서비스

이상과 같은 서비스 이외에도 은행간 외환거래 등을 해주는 자동확인(accord) 서비스,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행정, 무역 및 운송을 위한 전자문서교환에 관한 국제 표준」인 EDIFACT(Electronic Data Interchange for Administration, Commerce and Transport 이하 EDIFACT라 한다)의 표준 메시지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작성한 후 전자식으로 송수신을 대행해 주는 EDI 서비스, 정형화 되어 있지 않은 금융기관의 자료 및 문서를 전송해 주는 은행간 문서전송(Interbank File Transfer:IFT)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문서 전체가 암호화되어

25) All financial messages transmitted via SWIFT must conform to the rules of one of the message types described in the Standard Volumes of User Handbook, SWIFT, Standard Volume Update, version 1.5 93/2, Part V, chapt. 1.

26) 제일은행, SWIFT, pp. 29-35

27) 사용자간 메시지는 ADPU01에 속하는 것으로 각 메시지형태당 受容量이 한정되어 있는데 현재는 한개의 메시지형태에 2,000자(영문자 개념)까지 수용할 수 있다.





기본 두문의 예

{ 1: F 01 CITI US 33 A CHI 2222 123456}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① 기본 두문 블록이 시작된다는 표시이며 항상 1을 사용한다.
- ② 메시지의 접속의 종류를 나타낸다. 일반접속과 금융접속으로 구분된다.
- ③ APDU의 번호가 기재된다.
- ④ 은행 코드가 기재된다.(제일은행의 경우 KOFB)
- ⑤ 국가코드으로써 2자리로 구성된다. (한국의 경우 KR)
- ⑥ 지역코드로 2자리로 표시된다.(서울의 경우 SE)
- ⑦ 터미널 코드로 사용자의 터미널 코드가 입력된다.
- ⑧ 지점 코드 (본점인 경우 XXX)
- ⑨ 접속번호로 시스템을 입력할 때 마다 그 접속에 고유한 4자리 숫자의 접속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 ⑩ 입출력 번호로, 입력번호는 사용자터미널에 들어갈 때, 출력번호는 사용자 터미널에서 출력메세지가 산출될 때 시스템이 부여한다.

② 본문 (Text) -- 본문에는 거래의 내역, 자금수취인, 중개은행 등의 메시지가 기록된다. 은행간 메시지, 시스템 메시지 및 서비스 메시지는 본문이 있으며 4번 블록에 나타난다.

③ 미문 (Trailer) -- 메시지를 통제할 때, 특정 또는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때 또는 메시지를 조작하는 목적을 가르킬때 사용된다. 미문은 항상 5번 블록에 나타나게 된다.

2. 신용장거래에 관한 서비스 업무

SWIFT가 신용장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직까지 한정되어 있다. 즉, 신용장의 개설, 통지 등에 관하여 통지은행이 수익자에게 통지하는 일방적인 서비스만 이루어 진다. 은행이 SWIFT시스템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신용장 관련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sup>29)</sup>.

첫째, 신용장의 개설 및 수령(Issue of a documnetary credit) --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이 신용장의 내용을 통지은행 앞으로 보내는 메시지로 신용장의 제조조건이 명시된다. 신용장에 관한 정보가 많아 하나의 메시지(MT700)에 모두 기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최대 3개 까지의 메시지(MT701)를 보낼 수 있다.

둘째, 신용장의 사전통보(MT705) -- 개설은행이 통지은행에 보내는 메시지로 신용장의 조건변경, 제3은행의 신용장 통지, 신용장의 수령확인으로서 신용장과 관련된 통지를 하는 메시지이다.

셋째, 신용장의 조건변경(MT707) -- 개설은행이 통지은행에 보내는 메시지로 통지은행에서 다른 통지은행으로 또는 양도은행에서 통지은행으로 보낼 수도 있다.

넷째, 제3은행의 신용장 통지(MT710, 711) -- 개설은행으로 부터 신용장을 접수 받은 통지은행이 수익자에게 통지할 은행 또는 다른 통지은행에 보내는 메시지로써 신용장의 조건을 통지한다.

다섯째, 신용장의 양도(MT720,721) --신용장 수익자가 신용장을 양도할 때 수익자로 부터 양도실행을 위임받은 은행이 제2의 수익자의 통지은행으로 보내는 메시지로써 신용장의 양도 조건등이 명시된다.

여섯째, 신용장의 수령확인(MT730) -- 통지은행에서 개설은행 또는 다른 통지은행으로 보내는 메시지이며 개설은행이 보낸 신용장 메시지를 접수,수령하였다는 확인이다.

일곱째, 하자서류 접수통보(Advice of discharge, MT732) -- 메시지 발송은행인 개설은행이 수신은행인 지급/매입/인수은행에 대하여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하자있는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하였음을 통보하는데 사용된다.

여덟째, 부적격통보(Advice of refusal, MT734) -- 개설은행이 하자있는 서류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서류접수를 거절한다는 통보를 할 때 사용된다.

29) 제일은행, SWIFT, 1992, pp.96 - 105

&lt;표 3-1&gt; 국내은행의 신용장 관련 서비스 제공 현황

구 분	은 행 명	비 고
수출입승인	33개 시중은행(국민은행 개통예정)	
신용장통지	11개 은행 (외환, 한일, 제일, 조흥, 상업, 기업, 신한, 신탁, 강원, 부산, 경기)	
신용장개설	31개 은행(외환, 한일, 제일, 조흥, 상업, 기업, 신한, 신탁, 강원, 한미, 보람, 평화, 하나, 대동, 광주, 동화, 부산, 경기, 장기, 주택, 대구, 충청, 전북, 농협, 경남, 산업, 축협, 수협, 충북, 제주)	
내국신용장	21개 은행 (외환, 한일, 제일, 조흥, 상업, 기업, 신한, 신탁, 강원, 한미, 보람, 하나, 대동, 광주, 동화, 부산, 경기, 주택, 농협, 경남, 국민)	
FIRM BANKING	7개 은행(한일, 신한, 기업, 신탁, 상업, 외환, 조흥)	

주) 1994년 말 현재

자료: KEB

이상과 같이 SWIFT시스템에 의하여 추심 및 신용장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sup>30)</sup>가

30) 대금상환 및 지급과 관련된 서비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금상환권한 위임(Authorization to reimburse, MT740) -- 개설은행이 상환은행으로 보내는 메시지로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대금상환권한 위임, 대금상환요청 및 대금상환권한 위임의 변경 등이 있다.

둘째, 대금상환요청(MT742) -- 지급/매입은행이 상환은행으로 보내는 메시지이며 신용장금액의 상환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셋째, 대금상환권한 위임의 변경(MT747) -- 개설은행이 상환은행에 보내는 메시지로서 수신자인 상환은행에게 대금상환권한 위임과 관련한 조건의 변경에 관해 통보하는 내용이다.

넷째, 하자통보(MT750) -- 화환어음 등의 서류를 제시받은 은행이 개설은행에 보내는 메시지이며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맞지 않아 하자가 있음을 통보하기 위해 사용

금융기관간에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비 가입자인 일반인에게는 SWIFT시스템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SWIFT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 V. SWIFT시스템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 1. SWIFT시스템상의 문제점

#### (1) 일반적인 문제점

SWIFT시스템의 기본적인 문제점은 대 고객 업무가 개발되어 있지 않아 금융기관 간에만 이용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SWIFT시스템은 전술한 바와 같이 은행간에 전산망을 통하여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자 조직된 금융기관전용 전산망이다. 따라서 은행간의 업무에 주안점을 두고 개발된 시스템으로 대 고객 관련된 업무는 처음부터 염두에 두지 않고 개발된 시스템이다. 특히 일반 기업에게는 가입이 금지되어 SWIFT시스템을 직접 이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이 일반 기업의 가입이 제한됨에 따라 금융기관 이외의 기업은 SWIFT시스템이 제공하는 메시지를 열람할 수 없어 보안성이 유지된다는 장점도 있다. 특히 은행의 고유번호의 부여 및 사용자의 제한 및 인증 키의 사용으로 불법사용이 어려울 뿐 아니라 전신문 자체가 암호화되어 전송되기 때문에 이를 해독하는 별도의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여 뛰어난 보안성으로 금융기관에서는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이

한다.

다섯째, 지급/인수/매입권한의 위임(Authorization to pay, accept or negotiate, MT752)으로, 개설은행이 타 은행의 요청에 따라 지급,인수,매입 권한을 위임할 때 사용하는 메시지로 제시된 환어음에 이미 통보된 하자이외에 다른 하자가 없는 경우 환어음의 지급,인수,매입을 인정한다는 통보를 보낼 때 사용한다.

여섯째, 지급, 인수, 매입의 통보(Advice of payment, acceptance, negotiation, MT754)로, 지급,인수,매입은행이 개설은행에게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지급,인수,매입하였으며 신용장에 지시된 대로 서류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하는 내용의 메시지이다

일곱째, 대금상환,지급방법의 통보(Adevice of reimbursement or payment, MT756)로 개설은행이 지급방법을 지정하지 않고 신용장을 발행하였을 경우 지급방법에 대해 지급은행에 통보하는 내용이다.

러한 점 때문에 은행관련 업무와 무역거래의 일반업무간의 연결이 불가능하여 SWIFT시스템의 이용율이 저조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종합무역전산망인 EDI의 활용이 점차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SWIFT시스템의 개방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제한적이거나 수출입 허가를 받은자에게 한국 무역정보통신(주) (Korea Trade Network ; KTNET, 이하 KTNET라 한다.)의 전산망을 통하여 수출 승인서의 발급, 신용장의 도착통지 등 일부 업무에서 기업들에게 SWIFT시스템을 이용한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그러나 현재로는 무역업체가 은행에서 종이서류인 신용장을 찾아가는 대신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취하는 정도의 제한적인 서비스만이 가능하다.

한편 금융기관의 온 라인 전산망에 수협, 축협, 우체국 등이 95년 6월 부터 가입하여 서비스를 할 예정으로 있어 은행 이용자들은 더욱 편리한 온 라인망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sup>31)</sup>. 특히 SWIFT시스템이 무역업무에 대한 서비스를 다양하게 개발하지 못할 경우 은행간의 통신은 팩시밀리나 텔렉스에 비하여 빨라질 지 모르나 무역업무를 처리하는 기업에게는 별다른 이점을 제공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2) 시스템 운영상의 문제점

첫째, SWIFT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 통신망(Value Added Network; VAN 이하 VAN이라 한다.)을 이용하여야 하는데 종합무역통신망인 KTNET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수출입·업 등록자에 한정되어 있어 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가 이를 이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즉, 무역대리점 등 수출입 허가를 받지 않은 기업이 신용장을 수취할 경우 통지은행은 종이서류를 수익자에게 전달할 수 밖에 없어 SWIFT시스템의 이점을 누릴수 없게 된다. 또한 수입상을 대리하여 검사를 하거나 또는 오파를 발행할 경우 전산망을 이용하여 서류를 전송할 수 없게 된다.

만약 VAN사업자 없이 SWIFT시스템을 통하여 은행과 기업이 직접 연결될 경우, 중간에 개입된 은행이 기업의 전자서류를 수리하게 되면 은행이 수익자에게 진본임

31) 그러나 이러한 온 라인망의 가동은 무역거래에서는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큰 의의는 없다고 하겠다.

을 확인시켜 주는 영뚱한 결과가 발생한다.

둘째, 무역거래에서 SWIFT시스템이 이용되기 위하여는 무역거래와 관련된 문서를 UNEDIFACT의 기준에 맞게 설계하고 이를 유엔 전자문서(UN Standard Message; UNSM)로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SWIFT는 전세계의 은행이 공통으로 이용하는 전산망이므로 SWIFT에서 무역관련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정한다면 관련기관이나 업계에서는 이 표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할 것이다. 그러나 SWIFT는 일반기업이 SWIFT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전자문서에 대한 표준 제정이나 SWIFT시스템에 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 2. 신용장 거래에의 적용상의 문제

신용장의 통지를 비롯한 일부 신용장관련 업무가 SWIFT시스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는 단지 종이 서류를 은행에 가지 않고도 수취할 수 있는 수준의 서비스만 제공할 뿐 진정한 의미에서의 종합무역 자동화와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SWIFT의 이용이 증가하여 본격적인 SWIFT시스템의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어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첫째, 신용장 양도실행은행의 진위성 확인문제 -- 신용장의 양도를 현행 통일규칙과 같이 지정은행에서 양도를 이행하도록 규정하는 경우<sup>32)</sup> 지정은행은 신용장의 진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신용장의 양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신용장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제2의 수익자에게는 조건변경을 통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sup>33)</sup>.

둘째, 신용장의 통지비용의 부담문제 -- SWIFT시스템에 의해 신용장이 통지될 경우 개설은행에서 신용장 내용을 전송하면 즉시 통지은행의 컴퓨터에 입력이 되고 이를 다시 수익자에게 전송하면 순식간에 신용장의 통지가 일어난다. 이때 통지비용은

32) UCP500 제48조 a항,

A transferable credit is ---- the bank specially authorized in the credit as a transferring bank, ----.

33) UCP 500, 제48조 d항.

원칙적으로 개설신청인의 부담이다<sup>34)</sup>. 그러나 국가간에 EDI 사용료가 각기 다른 경우 비용이 높은 국가에서 비용이 낮은 국가로 전가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신용장의 통지비용을 수익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는 국가에서도 이를 수익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일반화될 우려가 있다. 또한 은행이 수익자에게 징수할 경우 이를 어느 수준에서 결정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셋째, 통지은행의 확인 -- 수익자가 통지은행으로 부터 신용장을 통지받는 경우, 통지은행이 개설은행으로 부터 SWIFT시스템을 이용하여 진정한 신용장을 수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통지은행만이 신용장의 개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타은행에서 동 신용장을 사용할 경우 당사자들이 사기를 당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다만 전송된 신용장의 내용을 통지은행이 종이서류인 신용장 양식에 출력한다면 그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넷째, 분할양도의 경우 -- 신용장이 종이 서류로 출력되지 않고 컴퓨터로 신용장의 내용이 수익자에게 전달될 경우 신용장을 분할 양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통지은행은 신용장을 통지해 준후 신용장 거래에서 제외되는데 이러한 경우<sup>35)</sup> 신용장 양도실행은행은 신용장을 분할하여 양도한 후 양도된 신용장의 진위성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현행 SWIFT방식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

다섯째, 통지은행 서명의 유효성 문제 -- 신용장을 통지하는 과정에서 수익자는 통지은행의 전자서명만을 신뢰하고 신용장을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개설은행이 명시적으로 통지은행에게 자신을 대리하도록 위임하지 않은 경우, 위임을 받지 않은자의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여섯째, 신용장 통일규칙과 SWIFT시스템간의 조화문제 --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신용장 통일규칙은 종이서류를 원칙으로 하여 모든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SWIFT

34) UCP 500 제18조 a항,

Banks utilizing the service of another bank or other banks for the purpose of giving effect to the instructions of the applicant do so for the account and at the risk of such applicant

35) 통지은행이 신용장 사용 지정은행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용장을 통지하는 것만으로 통지은행의 의무가 종료된다.

시스템에 의해 신용장이 통지되고 사용될 경우 통일규칙의 규정과 상충된다. 신용장 통일규칙의 규정들은 종이서류를 원칙<sup>36)</sup>으로 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전자신용장<sup>37)</sup>을 사용할 경우 통일규칙이 무용지물이 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 3. SWIFT시스템의 발전 방향

#### (1) 일반적인 발전방향

SWIFT시스템의 이용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비금융기관에게도 시스템의 이용이 개방되어야 한다. 비록 직접적으로 SWIFT시스템에 접속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KTNET 등의 VAN사업자나 인터넷을 통하여 접근을 허용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SWIFT시스템이 계속 폐쇄적으로 운영될 경우 기업들은 독자적인 금융망을 개발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2개의 금융전산망으로 인해 금융거래에 일대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또한 일반기업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소프트 웨어의 개발이나 간단한 하드웨어의 개발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소프트 웨어의 가격이 약 3백만원 이상의 고가이기 때문에 기업이 SWIFT의 이용에 적극적이지 못하다.

또한 SWIFT시스템에 관한 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무역업체 가운데 SWIFT시스템에 관한 일반적인 개념을 파악하고 있는 업체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은 학계에도 마찬가지로 신용장 관련 업무가 EDI를 통하여 SWIFT시스템으로 전송된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기업체에 대한 홍보는 물론이거니와 SWIFT와 관련된 안내책자의 발간 및 배포 등에도 앞장서야 한다.

은행은 SWIFT시스템의 중앙등록기관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 즉, 신용장의 양도,

36) UCP 500 제4조 「서류거래의 원칙」 및 제5조 b항; 제8조 b항 ⅰ, ⅱ; 제9조 a항, b항, d항; 제10조 b항 ⅰ, ⅱ, c항, d항; 제13조 a항, b항, c항; 제14조 a항, b항, c항, d항, e항; 제15조; 제16조, 이외에도 운송서류, 보험서류, 상업송장에 관한 규정 이외에도 서류에 관한 규정은 많다.

37) 전자신용장이란 개설은행으로부터 SWIFT망을 통하여 통지된 신용장을 종이서류로 출력하지 아니하고 컴퓨터로 수익자에게 전송할 때 이를 전자신용장이라 지칭한다.



사용, 통지 등과 관련하여 진위성 여부를 확인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원수익자와 제2의 수익자 상호간에 불신이 야기될 경우, 진위성 여부의 확인이나 통지확인 등을 해주는 중앙등록기관이 있는 경우 금융거래는 더욱 편리할 것이다.

현재 KTFNET에서는 수출입 등록을 기업에게만 EDI를 이용토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된다. 수출입 등록을 필한 기업에게만 개방되는 이유가 분명하지 못하며 이러한 제한은 EDI추진에 저해요인으로 등장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SWIFT시스템의 이용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는 SWIFT시스템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종합무역 자동화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 (2) 신용장상의 발전방향

통지은행의 신용장 진위성 여부의 확인 의무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이는 통지은행만이 신용장의 진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용장의 진위성 여부를 확인한 후 시행되어야 하는 신용장의 각종 이용방법도 통지은행을 통하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신용장의 양도, 확인, 사용등 신용장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통지은행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특히 현행 신용장 통일규칙<sup>38)</sup>에 의하면 개설은행이 특정은행을 신용장 사용은행으로 지정하였다 하더라도 지정된 은행은 이에 따를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정은행은 지정을 받더라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수익자가 서류를 제시하면 그때 지정을 거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지정은행은 지정을 받는 즉시 이에 따를 것 인지의 여부를 수익자에게 확인해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통일규칙에 삽입되어야 한다.

신용장의 양도도 통지은행에서만 양도할 수 있도록 한정하여야 하며 신용장의 확인 역시 통지은행에서만 확인이 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개설은행에서 신용장을 조건 변경할 경우 즉시 수익자에게 통지되므로 조건변경이 일어나므로 관련은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지은행으로 한정시킬 필요가 있다.

전자식 신용장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용장을 이용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통지은행은 수익자의 접속번호, 통지번호 등을 부여하

38) UCP 500, 제10조 c항

여 타인이 신용장을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용장이 SWIFT시스템에 의해 수익자에게 종이신용장으로 재출력되어 통지된다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무역 자동화망이 완성되어 모든 신용장이 컴퓨터로 거래된다면 종이 신용장을 위주로 규정된 현행 신용장 통일규칙을 적용할 수 없다. 비록 전자식 신용장에 신용장 통일규칙을 적용한다는 문언이 있더라도 통일규칙이 종이서류를 위주로 하여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자식 서류에 대한 규정을 삽입하든가 아니면 전자식 신용장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신용장 통일규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 VI. 결론

SWIFT시스템은 비록 은행간의 국제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된 통신망이라 하더라도 정보통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하에서는 비금융기관인 기업에게도 공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SWIFT시스템의 개발역사가 짧고 무역정보통신망의 구축이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SWIFT시스템이 신용장업무에 이용되는 빈도는 매우 낮다. 이러한 현실하에서 아직 SWIFT시스템을 규율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SWIFT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떤 법을 준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컴퓨터의 산업이 발달되면 될수록 이를 이용한 지능적인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마련이다. 컴퓨터에 의한 범죄는 외부에 노출되는 것보다 내부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컴퓨터 해커들에 의한 범죄의 발생율은 그다지 높지 않지만 정보산업이 점차 발달되면 범죄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법 제정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정보통신은 한 나라의 중추적인 신경역할을 하게되며 정보산업에서 낙후되면 경제적인 종속을 면치 못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보산업의 발달을 위해 국가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SWIFT시스템의 EDI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 운송서류의 전자문서화를 적극 추진하여 신용장의 수취에서 운송서류의 매입까지 일련의 과정을 컴퓨터로 처리하게 된다면 수익자가 서류를 발송하는 시점에서 바로 개설은행이 전자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심사하여 지급을 결정하게 되면 SWIFT망을 이용하여 수익자의 계좌로 송금하게 되므로 수익자는 서류의 발송과 동시에 지급을 받게 된다. 따라서 신용장 거래는 상품의 선직과 동시에 대금결제까지의 신용장 처리과정이 동시에 종료되어 당사자들이 불필요한 종이서류의 취급과 시간을 낭비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무역거래에서 거래 절차의 간소화를 달성하므로써 국제경쟁력의 제고시킬수 있게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안식, 신무역제도론, 법문사, 1990.
- 김은상, "무역업무의 혁신-무역자동화", 『하주』 1992년 여름호,
- 문희철, 심상렬, 무역자동화론, 무역경영사, 1995
- 오호근, EDI란 무엇인가, 크라운출판사, 1993
- 최봉혁, 신용장통일규칙 해설집, 1993, 국제무역연구원
- 제일은행, SWIFT, 1992
- 한국의환은행, SWIFT, 1992
- 국민은행, SWIFT, 1992
- KTNET, 「상역, 외환실무과정」, 한국무역정보통신, 1995. p.5
- JASTPRO, "海上航空貨物に 係る 輸出入制度手續の 調査研究", 1989. 3
- Emmelhainz, Margaret A., EDI - A Total Management Guide -, Van Sostrand Reinhold, 1993.
- John F. Wilson, Carriage of Goods by sea, 1st ed. Pitman, 1988.